

의안번호	2212722
의 퇴 인	이해민의원
회 답 일	2025.11.5.
추계번호	25D481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른 대법관 증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사법행정위원회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사법행정위원회와 사무처 설치·운영의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31억 500만원, 2031년 83억 2,8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281억 7,800만원(연평균 56억 3,6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3,105	4,278	5,569	6,914	8,328	28,178	5,636

주: 본 추계는 인건비,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차량 임차료, 회의참석수당 등 추계가 가능한 항목에 한정하여 추계한 결과이며, 실제 대법관이 증원되는 과정에서 법정 시설비, 사무실 재배치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법원의 종류)	법원의 종류에 노동법원과 소비자법원을 추가하여 9종류로 함(제1항)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노동법원·소비자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 시·군법원의 설치·폐지 및 관할구역은 따로 법률로 정함(제3항)	의무규정
2	안 제4조(대법관)	대법관의 수를 14명에서 31명으로 17명 증원함 - 법 시행 첫째 5명, 그 후에는 매년 3명씩 증원함(안 부칙 제2조)	의무규정
3	안 제9조의2(판사회의)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 및 회생법원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에 사법행정에 관한 심의·의결기관으로 판사회의를 두며(제1항), 판사회의는 각급 법원에 소속된 판사 전원으로 구성하되,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함(제2항)	의무규정
4	안 제9조의3(전국법관대표회의)	판사회의의 법관대표로 구성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두며(제1항),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의 판사수를 고려하여 법관대표를 각급 법원별로 할당하되 100인 이상의 법관대표로 구성하고, 그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함(제2항)	의무규정

5	안 제9조의4(전국법원장회의)	사법행정에 관한 자문등을 위하여 각급 법원의 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법원도서관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으로 구성되는 전국법원장회의를 두며(제1항),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전국법원장회의의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함(제2항)	의무규정
6	안 제41조의2(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함(제2항)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함(제3항) 1. 대법관회의에서 추천하는 법관 1명 2. 사법행정위원회에서 추천하는 2명(대법원장 제외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가능) 3.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하는 법관 2명 4. ~ 6. (현행과 같음) 7. 국회가 추천하는 4명(국회의원 제외) 8.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3명 9.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	의무규정
	안 제41조의3(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대법원장이 지명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대법원에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두며(제1항),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1조의2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함(제2항)	의무규정
7	안 제67조의3(사법행정위원회위원추천위원회)	대법원장이 임명할 위원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사법행정위원회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함)를 두며(제1항),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함(제2항) 국회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함(제4항) 1.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1명 2.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하는 법관 3명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1명 4.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5. 제4호의 교섭단체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의무규정
9	안 제67조의2(사법행정위원회 구성 등)	사법행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됨(제1항)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67조의3에 따른 사법행정위원회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임명함(제2항) 1. 법관 3명 2. 변호사 4명(상임위원 2명 포함) 3. 그 밖에 재판제도 및 행정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주요 사업정책의 수립 등 사법행정업무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명(상임위원 2명 포함)	의무규정

	안 제67조의6(사법행정위원회의 운영)	정기회의는 매달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명 이상이 요구할 경우 개최함(제1항)	의무규정
		사법행정위원회는 안건의 연구·검토·심의를 위하여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10	안 제67조의7(사법행정위원회 사무처장)	사법행정위원회 사무처에 사무처장을 두며(제1항), 사무처에 사무처장비서관을 둔(제4항)	의무규정
	제68조(임명)	사무처장은 사법행정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임명함(제1항)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조(법원의 종류)	- (미대상)	법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음
2	안 제4조(대법관)	○	-
3	안 제9조의2(판사회의)	- (미대상)	현행 예산 범위(각종회의 운영비 등)에서 수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4	안 제9조의3(전국법관대표회의)	- (미대상)	
5	안 제9조의4(전국법원장회의)	- (미대상)	
6	안 제41조의2(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	-
7	안 제41조의3(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	-
8	안 제67조의3(사법행정위원회위원추천위원회)	○	-
9	안 제67조의2(사법행정위원회 구성 등)	○	-
	안 제67조의6(사법행정위원회의 운영)	○	-
10	안 제67조의7(사법행정위원회 사무처장)	○	-
	제68조(임명)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대법관 증원(안 제4조),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안 제41조의2·제41조의3),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안 제67조의3), 사법행정위원회(안 제67조의2·제67조의7)와 사무처(안 제19조·제67조의8)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하여 추계함
- 본 추계에서 대법관 증원(14명→31명)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대법원의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인건비(보수, 기관부담금),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차량 임차료로 구분하여 추계함
- 본 추계에서는 「법원조직법」 제23조¹⁾에 따라 대법관의 증원과 함께 대법관 비서관도 증원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법률에서 그 수를 직접 명시하지 않은 인력의 경우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함
 - 대법원에 따르면, 각 대법관비서실에는 4명의 비서인력(운전 1명 제외)이 근무함
 - 개정안에 따라 대법관이 증원되는 경우 대법관 1명당 처리사건이 축소(3,305건→1,322건)될 것으로 예상되고²⁾, 각 대법관비서실의 규모가 조정될 수도 있어, 현시점에서 각 대법관비서실 축소 조정 및 인력재배치 후 비서 인력의 순증 인원을 예측하기 곤란함
 - 재판연구관의 정원은 총 134명(판사 102명, 임기제공무원 32명)인데, 대법관이 증원되더라도 연구사건의 수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현시점에서 재판 연구관 등의 증원 여부, 증원 또는 재배치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 본 추계에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이하 “후보추천위원회”라 함)의 추가재정소요는 법관이 아닌 외부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참석수당을 추계 하며, 그 외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

1) 「법원조직법」

제23조(대법원장비서실 등) ④ 대법원에 대법관비서관을 둔다.

⑤ 대법관비서관은 법원서기관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 대법관 증원 시 1인당 사건처리건수(출처: 2024 사법연감을 바탕으로 재구성)

사건 처리건수	현행		대법관 증원 시	
	가동 대법관	1인당 처리건수	가동 대법관	1인당 처리건수
39,662건 (2023년 기준)	12명 (법원행정처장 제외)	3,305건	30명	1,322건

- 안 제41조의2³⁾에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구성[위원정수 15명, 법관 3명, 외부위원 12명(순증 5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1조의3⁴⁾에서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준용하고 있음
- 現 대법관의 임기, 개정안에 따른 대법관 증원, 대법원장 지명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고려할 때, 추계기간 동안 연도별 후보추천위원회 구성횟수(회의횟수)는 다음과 같이 추정됨

[표 2] 후보추천위원회 구성횟수 추정: 2027~2031년

(단위: 회)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후보추천 위원회	대법관	임기만료	2	1	2	5	1
		증원	5	3	3	3	3
		소계	7	4	5	8	4
	헌법재판관 임기만료		—	—	2	1	—
	합계		7	4	7	9	4

자료: 대법원의 제출자료와 개정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본 추계에서 사법행정위원회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추천위원회”라 함)의 추가 재정소요도 법관이 아닌 외부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참석수당을 추계하며, 그 외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

- 안 제67조의3⁵⁾에 따르면, 위원추천위원회는 사법행정위원회위원 후보자를 추천

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1조의2(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②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대법관회의에서 추천하는 법관 1명
2. 사법행정위원회에서 추천하는 2명(대법원장을 제외한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1명은 여성이어야 한다.
3.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하는 법관 2명. 이 경우 1명은 여성이어야 한다.
4. ~ 6. (현행과 같음)
7. 국회가 추천하는 4명(국회의원은 제외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8.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3명
9.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

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1조의3(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②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1조의2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67조의3(사법행정위원회위원추천위원회) ① 대법원장이 임명할 위원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사법행정위원회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국회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1명

하기 위하여 국회에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법관 3명, 외부위원 6명)으로 구성하도록 함

- 안 제67조의26)에서 사법행정위원회는 위원장인 대법원장을 포함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한 점을 고려할 때,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할 위원 후보자는 11명인데,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2027년, 위원 임기(4년)가 만료되는 2031년 회의가 각각 1회씩 개최되는 것으로 가정함

[표 3] 위원추천위원회 구성횟수 추정: 2027~2031년

(단위: 회)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위원추천 위원회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1	-	-	-	1
	합계	1	-	-	-	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본 추계에서 후보추천위원회와 위원추천위원회의 회의참석수당은 대법원의 「각종 위원회 등의 참석수당 등 지급에 관한 지침」 7)과 그동안의 회의참석

2.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하는 법관 3명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1명
 4.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5. 제4호의 교섭단체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 ⑥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위원 후보자가 임명되면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 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67조의2(사법행정위원회 구성 등) ① 사법행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②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67조의3에 따른 사법행정위원회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변호사 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 관련 분야에 종사한 사람 중 임명한다.
1. 법관 3명
 2. 변호사 4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단서 생략>
 3. 그 밖에 재판제도 및 행정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주요 사업정책의 수립 등 사법행정 업무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 7) 「각종 위원회 등의 참석수당 등 지급에 관한 지침」
제2조 (참석수당) ①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포함) 및 각급 법원의 각종 위원회(연구반, TFT 등 포함, 이하 같다)에 참석한 위원(연구반원, TFT팀원 등 포함,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1일당 150,000원 한도 내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는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 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참석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위원이 법관 및 법원공무원인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 (용역제공에 대한 사례금)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 안전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50,000원 이내의 안전검토수당 등의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후단 생략>
② 주제발표문이나 검토보고서의 분량이 A4 용지 30장(200자 원고지 120장)을 초과하고, 그 내용이 독창적이며 가치가 있는 등 별도의 용역 제공에 과다한 노력을 요한 경우에는 250,000원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는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 안전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사례금을 지급한다. 다만, 위원이 법관 및 법원공무원인 경우에는 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수당 지급사례를 참고하여, 회의참석 1회당 350,000원을 지급하며, 추계 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 본 추계에서 사법행정위원회 설치·운영의 추가재정소요는 상임위원(3명, 사무처장 제외⁸⁾)의 인건비(보수, 기관부담금)·기본경비·자산취득비·차량 임차료, 비상임 외부 위원(4명)의 회의참석수당을 합산하여 추계함

- 사법행정위원회의 위원장인 대법원장과 위원인 법관(3명)은 현직 신분이어서, 현행법에 따라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함
- 사법행정위원회가 사법행정을 총괄하고 위원장이 대법원장인 점을 고려하여, 상임위원(3명, 사무처장 제외)은 장관급 공무원으로 가정함
- 안 제67조의7⁹⁾에서 정기회의는 매달 1회 이상, 임시회의는 위원장 필요 시, 위원 3명 이상 요구 시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법행정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각각 월 1.5회(연 18회) 개최되는 것으로 가정함

[표 4] 사법행정위원회 회의횟수 추정: 2027~2031년

(단위: 회)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사법행정위원회	전체회의	정기회의	12	12	12	12	12
		임시회의	6	6	6	6	6
		소개	18	18	18	18	18
	분과위원회		18	18	18	18	18
	합계		36	36	36	36	36

주: 분과위원회가 복수로 구성될 경우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횟수를 합산하면 18회를 초과할 수 있으나, 상기의 분과위원회 회의횟수는 비상임 외부위원 1명당 연간 참석할 것으로 추정되는 횟수를 의미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사법행정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비상임위원 회의참석수당은 회의참석 1회당 35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함

□ 본 추계에서 사법행정위원회 사무처 설치·운영의 추가재정소요는 사무처장과 비서관의 인건비(보수, 기관부담금)·기본경비·자산취득비·차량 임차료를 합산하여 추계함

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68조(임명) ① 사무처장은 사법행정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67조의7(사법행정위원회의 운영) ① 정기회의는 매달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명 이상이 요구할 경우 개최한다.

④ 사법행정위원회는 안건의 연구·검토·심의를 위하여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법관이 아닌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법관인 위원은 상근하지 아니한다.

- 안 제67조의8¹⁰⁾과 제68조¹¹⁾에 따라 사법행정위원회 사무처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임명하므로 장관급 공무원으로 하고, 비서관은 4급 공무원으로 가정함
- 사무처의 차장 이하 직원은 現 법원행정처의 직원을 승계하고, 사무처장과 비서관 외 인건비·기본경비·사업비는 現 법원행정처 예산과 동일할 것으로 예상됨
- 본 추계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사회보험 기관부담 요율, 소비자물가상승률, 기관 설립 1인당 자산취득비(정부기관) 단가¹²⁾를 각각 적용하여 추정함
- 다만, 노동법원·소비자법원(안 제3조제1항제8호·제9호 등), 판사회의(안 제9조의2), 전국법관대표회의(안 제9조의3), 전국법원장회의(안 제9조의3), 법관인사위원회 폐지(안 제25조의2), 소속 기관장의 직급체계 조정(안 제74조·제76조의3·제78조·제81조)은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함
 - 노동법원·소비자법원 설치: 다른 법률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
 -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회의·전국법원장회의: 현행 예산 범위에서 수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법관인사위원회 폐지·소속 기관장 직급체계 조정: 재정지출의 감소 또는 증가 규모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개정안은 부칙에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 대법관의 증원은 시행 첫해에 5명, 그 후에는 매년 3명씩 증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27년 5명,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3명씩 증원하는 것으로 가정함

1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67조의8(사법행정위원회 사무처장) ④ 사무처에 사무처장비서관을 둔다.

1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68조(임명) ① 사무처장은 사법행정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12)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기관부담 요율, 소비자물가상승률, 1인당 자산취득비 전망(2025.3.31. 경제전망 기준)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2.4	2.4	2.4	2.4	2.4	2.4	2.4
기관부담 요율(%)	13.066	13.130	13.194	13.286	13.380	13.476	13.559
소비자 물가상승률(%)	2.0	2.0	2.0	2.0	2.0	2.0	2.0
1인당 자산취득비(정부기관 천원)	4,981	5,080	5,182	5,285	5,391	5,499	5,60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대법관과 대법관비서관 증원(안 제4조제2항 및 현행법 제23조)

1) 인건비

- 개정안에 따른 대법관과 대법관비서관의 인건비는 증원인원(대법관 17명, 비서관 17명)의 보수와 사회보험 기관부담금을 합산하여 추계함
 - (보수) 증원인원에 직급별 1인당 보수액과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적용
 - (기관부담금) 보수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 사회보험 기관부담 요율 적용
- 2025년 기준 대법관과 대법관비서관의 보수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5] 법관 및 법원공무원 직급별 연봉액: 2025년

(단위: 천원)

구분	대법관	대법관비서관(4급) ¹⁾
봉급	111,522	72,407
관리업무수당	10,037	6,517
정액급식비	1,680	1,680
직급보조비	19,800	4,800
명절휴가비	11,152	7,241
정근수당	9,294	6,034
정근수당 가산금	-	1,560
재판수당	4,800	-
성과급(A등급)	-	7,087
합계	168,285	107,326

주: 1) 법원공무원 4급 평균 호봉(24호봉)을 적용

자료: 대법원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증원되는 대법관과 대법관비서관의 인건비는 다음과 같이 추계됨

[표 6] 대법관과 대법관비서관 인건비 추정: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대법관	보수	882	1,446	2,035	2,653	3,298	10,314
	기관부담금	116	191	270	355	444	1,376
	소계	998	1,637	2,305	3,008	3,742	11,690
비서관	보수	563	922	1,298	1,692	2,104	6,579
	기관부담금	74	122	172	226	283	877
	소계	637	1,044	1,470	1,918	2,387	7,456
합계		1,635	2,680	3,776	4,926	6,130	19,14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기본경비

- 기본경비는 대법원의 보수액 대비 기본경비 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함
 - 2025년 일반회계 기준 보수액(본부 인건비+소속기관 인건비, 1,393,531백만원) 대비 기본경비(90,168백만원)의 비율(6.47%)을 적용

[표 7] 대법관과 대법관비서관 기본경비 추정: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보수액	대법관	882	1,446	2,035	2,653	3,298	—
	비서관	563	922	1,298	1,692	2,104	—
	소계	1,445	2,368	3,333	4,345	5,402	—
보수액 대비 기본경비 비중		6.47%	6.47%	6.47%	6.47%	6.47%	—
기본경비		93	153	216	281	350	1,09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자산취득비

- 자산취득비는 연도별 대법관과 대법관비서관의 증원 인원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1인당 자산취득비(정부기관) 단가를 곱하여 추계함
 - 자산취득비는 증원에 따른 신규 임명의 첫해에만 발생하며 이후 기본경비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가정

[표 8] 대법관과 대법관비서관 자산취득비 추정: 2027~2031년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증원 인원	대법관	5	3	3	3	3	17
	비서관	5	3	3	3	3	17
	소계	10	6	6	6	6	34
자산취득비 단가(천원)		5,080	5,182	5,285	5,391	5,499	—
자산취득비		51	31	32	32	33	17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4) 차량 임차료

- 차량 임차료는 대법관 증원 인원에 2024년 기준 차량 임차료 단가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각각 적용하여 추계함
 - 대법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대법관(13명)의 임차료는 363,052천원이며, 차량 1대당 임차료 단가는 27,927천원임

[표 9] 대법관 차량 임차료 추정: 2027~2031년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대법관 증원	신규	5	3	3	3	3	-
	누적	5	8	11	14	17	-
차량 임차료 단가		29.6	30.2	30.8	31.4	32.0	-
차량 임차료		148	242	339	440	545	1,71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5)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대법관과 대법관비서관을 각각 17명 증원하는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2027년 19억 2,700만원, 2031년 70억 5,8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221억 3,3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0] 대법관과 대법관비서관 증원의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대법관 증원 (안 제4조)	인건비	1,635	2,680	3,776	4,926	6,130	19,147	3,829
	기본경비	93	153	216	281	350	1,093	219
	자산취득비	51	31	32	32	33	179	36
	차량 임차료	148	242	339	440	545	1,714	343
	합계	1,927	3,106	4,363	5,679	7,058	22,133	4,42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안 제41조의2·제41조의3)

- 후보추천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의 추가재정소요는 후보추천위원회의 외부위원 순증분에 회의횟수와 회의참석수당 단가를 각각 곱하여 추계함
- 현재 재임 중인 대법관의 임기, 개정안에 따른 대법관 증원, 대법원장 지명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고려할 때, 후보추천위원회 구성횟수는 2027년 7회, 2028년 4회, 2029년 7회, 2030년 9회, 2031년 4회로 추정됨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른 후보추천위원회의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200만원, 2031년 7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6,6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1] 후보추천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의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명, 회,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대법관후보추천 위원회 (안 제41조의2)	대법관 추천	7	4	5	8	4	—	—
	외부위원 순증	5	5	5	5	5	—	—
	회의횟수	7	4	5	8	4	—	—
	회의참석수당	0.35	0.35	0.35	0.35	0.35	—	—
	소계	12	7	9	14	7	49	—
헌법재판관후보 추천위원회 (안 제41조의3)	헌법재판관 지명	—	—	2	1	—	—	—
	외부위원	12	12	12	12	12	—	—
	회의횟수	—	—	2	1	—	—	—
	회의참석수당	0.35	0.35	0.35	0.35	0.35	—	—
소계		—	—	8	4	—	12	—
합계		12	7	17	18	7	61	12

주 1. 회의횟수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자별로 각 1회 추천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가정한 것임

2.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사법 행정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안 제67조의3)

- 위원추천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의 추가재정소요는 위원추천위원회의 외부위원 수에 회의횟수와 회의참석수당 단가를 각각 곱하여 추계함
- 사법행정위원회위원의 임기(4년)를 고려할 때, 위원추천위원회 구성횟수는 2027년 1회, 2031년 1회로 가정함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른 위원추천위원회의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200만원, 2031년 2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4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2] 위원추천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의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명, 회,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안 제67조의3)	외부위원	6	6	6	6	6	—	—
	회의횟수	1	—	—	—	1	—	—
	회의참석수당	0.35	0.35	0.35	0.35	0.35	—	—
	합계	2	—	—	—	2	4	1

주 1. 회의횟수는 사법행정위원 후보자 수와 관계없이 2027년과 2031년 각각 1회 개최되는 것으로 가정함

2.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사법행정위원회의 설치·운영(안 제67조의2·제67조의7)

1) 인건비(상임위원)

□ 개정안에 따른 사법행정위원회의 인건비는 상임위원(3명, 사무처장 제외)의 보수와 사회보험 기관부담금을 합산하여 추계함

○ (보수) 상임위원 수에 장관급 공무원의 보수액(2025년 기준 166,252천원)¹³⁾과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적용

○ (기관부담금) 보수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 사회보험 기관부담 요율 적용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른 사법행정위원회 상임위원의 인건비는 다음과 같이 추계됨

[표 13] 상임위원 인건비 추정: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사법행정위원회 상임위원	보수액	인원	3	3	3	3	3	—
		평균 보수액	174	179	183	187	192	—
		소계	523	536	548	562	575	2,744
	기관부담금		69	71	73	75	77	365
	합계		592	607	621	637	652	3,10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기본경비(상임위원)

□ 기본경비는 대법원의 보수액 대비 기본경비 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함

○ 2025년 일반회계 기준 보수액(본부 인건비+소속기관 인건비, 1,393,531백만원) 대비 기본경비(90,168백만원)의 비율(6.47%)을 적용

[표 14] 상임위원 기본경비 추정: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보수액	상임위원	523	536	548	562	575	—
보수액 대비 기본경비 비중		6.47%	6.47%	6.47%	6.47%	6.47%	—
기본경비		34	35	35	36	37	17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3) 연봉액 149,692천원, 직급보조비 14,880천원(월 1,240천원), 정액급식비 1,680천원(월 140천원)을 합산하여 산출함

3) 자산취득비(상임위원)

- 자산취득비는 신규 임명 상임위원 수(3명)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1인당 자산취득비(정부기관) 단가를 곱하여 추계함
 - 자산취득비는 증원에 따른 최초 임명의 첫해에만 발생하며 이후 기본경비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가정

[표 15] 상임위원 자산취득비 추정: 2027~2031년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신규 임명 상임위원	3	-	-	-	-	-
자산취득비 단가(천원)	5,080	5,182	5,285	5,391	5,499	-
자산취득비	15	-	-	-	-	1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4) 차량 임차료(상임위원)

- 차량 임차료는 상임위원 수(3명)에 2024년 기준 차량 임차료 단가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각각 적용하여 추계함
 - 대법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대법관(13명)의 임차료는 363,052천원이며, 차량 1대당 임차료 단가는 27,927천원임

[표 16] 상임위원 차량 임차료 추정: 2027~2031년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상임위원	3	3	3	3	3	-
차량 임차료 단가	29.6	30.2	30.8	31.4	32.0	-
차량 임차료	89	91	92	94	96	46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5) 회의참석수당(비상임 외부위원)

- 사법행정위원회의 회의참석수당은 비상임 외부위원 수(4명)에 회의횟수와 회의참석수당 단가를 각각 곱하여 추계함
- 정기회의는 매달 1회 이상, 임시회의는 위원장 필요 시 또는 위원 3명 이상 요구 시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법행정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각각 월 1.5회(연 18회) 개최되는 것으로 가정함

- 사법행정위원회 비상임 외부위원 회의참석수당의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이 추계됨

[표 17] 비상임 외부위원 회의참석수당 추정: 2027~2031년

(단위: 명, 회,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전체회의	외부위원	4	4	4	4	4	—	—
	회의횟수	18	18	18	18	18	—	—
	회의참석수당	0.35	0.35	0.35	0.35	0.35	—	—
	소계	25	25	25	25	25	125	—
분과위원회	외부위원	4	4	4	4	4	—	—
	회의횟수	18	18	18	18	18	—	—
	회의참석수당	0.35	0.35	0.35	0.35	0.35	—	—
	소계	25	25	25	25	25	125	—
합계		50	50	50	50	50	250	50

주: 회의횟수는 사법행정위원회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가 각각 월 1.5회 가정하여 산출한 것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6)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7억 8,000만원, 2031년 8억 5,1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40억 1,3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8] 사법행정위원회 설치·운영의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사법행정 위원회의 설치·운영	인건비	592	607	621	637	652	3,109	—
	기본경비	34	35	35	36	37	177	—
	자산취득비	15	—	—	—	—	15	—
	차량 임차료	89	91	92	94	96	462	—
	회의참석수당	50	50	50	50	50	250	—
	합계	780	783	798	817	851	4,013	80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마. 사법행정위원회 사무처의 설치·운영(안 제67조의8·제68조)

1) 인건비

□ 개정안에 따른 사법행정위원회 사무처장(장관급)과 비서관(4급)의 인건비는 보수와 사회보험 기관부담금을 합산하여 추계함

○ (보수) 사무처장 보수액(2025년 기준, 장관급 166,252천원)¹⁴⁾과 비서관 보수액(2025년 기준, 107,326천원)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적용

○ (기관부담금) 보수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 사회보험 기관부담 요율 적용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른 사법행정위원회 사무처장의 인건비는 다음과 같이 추계됨

[표 19] 사무처장과 사무처장비서관 인건비 추정: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사무처장	보수	174	179	183	187	192	915
	기관부담금	23	24	24	25	26	122
	소계	197	203	207	212	218	1,037
비서관	보수	113	115	118	121	124	591
	기관부담금	15	15	16	16	17	79
	소계	128	130	134	137	141	670
합계		325	333	341	349	358	1,70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기본경비

□ 기본경비는 대법원의 보수액 대비 기본경비 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함

○ 2025년 일반회계 기준 보수액(본부 인건비+소속기관 인건비, 1,393,531백만원) 대비 기본경비(90,168백만원)의 비율(6.47%)을 적용

[표 20] 사무처장과 사무처장비서관 기본경비 추정: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보수액	사무처장	174	179	183	187	192	915
	비서관	113	115	118	121	124	591
	소계	287	294	301	308	316	1,506
보수액 대비 기본경비 비중		6.47%	6.47%	6.47%	6.47%	6.47%	—
기본경비		19	19	19	20	20	9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4) 연봉액 149,692천원, 직급보조비 14,880천원(월 1,240천원), 정액급식비 1,680천원(월 140천원)을 합산하여 산출함

3) 자산취득비

- 자산취득비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정부기관 1인당 자산취득비 단가를 곱하여 추계함
 - 자산취득비는 증원에 따른 신규 임명의 첫해에만 발생하며 이후 기본경비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가정

[표 21] 대법관과 대법관비서관 자산취득비 추정: 2027~2031년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신규 임명	사무처장	1	-	-	-	-	-
	비서관	1	-	-	-	-	-
	소계	2	-	-	-	-	-
자산취득비 단가(천원)		5,080	5,182	5,285	5,391	5,499	-
자산취득비		10	-	-	-	-	1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4) 차량 임차료(사무처장)

- 차량 임차료는 2024년 기준 차량 임차료 단가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각각 적용하여 추계함
 - 대법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대법관(13명)의 임차료는 363,052천원이며, 차량 1대당 임차료 단가는 27,927천원임

[표 22] 사무처장 임차료 추정: 2027~2031년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사무처장	1	1	1	1	1	-
차량 임차료 단가	29.6	30.2	30.8	31.4	32.0	-
차량 임차료	30	30	31	31	32	15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5)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사법행정위원회 사무처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사무처장과 비서관 임명의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3억 8,400만원, 2031년 4억 1,0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9억 6,700만원으로 추계됨

[표 23] 사법행정위원회 사무처 설치·운영의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사법행정 위원회의 설치·운영	인건비	325	333	341	349	358	1,706	341
	기본경비	19	19	19	20	20	97	19
	자산취득비	10	—	—	—	—	10	2
	차량 임차료	30	30	31	31	32	154	31
	합계	384	382	391	400	410	1,967	39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바.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른 대법관 증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사법행정위원회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 사법행정위원회와 사무처 설치·운영의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31억 500만원, 2031년 83억 2,8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281억 7,800만원(연평균 56억 3,600만원)으로 추계됨

[표 24]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대법관 증원(안 제4조)	1,927	3,106	4,363	5,679	7,058	22,133	4,427
대법관·헌법재판관후보 추천위원회(안 제41조의2)	12	7	17	18	7	61	12
사법행정위원회위원추천 위원회(안 제67조의3)	2	—	—	—	2	4	1
사법행정위원회 (안 제67조의2)	780	783	798	817	851	4,013	803
사법행정위원회 사무처장 (안 제67조의8)	384	382	391	400	410	1,967	393
합계	3,105	4,278	5,569	6,914	8,328	28,178	5,636

주: 본 추계는 인건비,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차량 임차료, 회의참석수당 등 추계가 가능한 항목에 한정하여 추계한 결과이며, 실제 대법관이 증원되는 과정에서 법정 시설비, 사무실 재배치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횟수, 회의참석수당 등 대법원의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법률에서 그 수를 직접 규정한 인력(대법관, 대법관비서관, 사법행정위원회의 상임위원, 사무처장, 사무처장비서관)만 증원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인건비 등을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장삼열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삼열	02-6788-4831	jsy@na.go.kr